

부산지방법원 2021. 10. 6 선고 2021나33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9. 1.

판 결 선 고 2021. 10. 6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. 2. 7. 선고 2016가소114712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3,000,000원 및 그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는 1996. 5. 1.부터, 3,000,000원에 대하여는 1996. 1. 1.부터 각 1997. 6. 10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3,000,000원 및 그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는 1996. 3. 31.부터, 3,000,000원에 대하여는 1996. 1. 1.부터 각 1997. 6. 10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

날까지는 연 2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2호증,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1)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7가단38196호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소송을

제기하였는데, 이 소송에서 피고가 그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은 자백간주 되었다.

2) 이에 위 법원은 1997. 8. 22. 위 소송에서 ‘피고는 원고에게 13,000,000원 및 그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 1996. 3. 31.부터, 3,000,000원에 대하여는 1996. 1. 1.부터 각 1997. 6. 10.까지는 연 6푼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그 판결은 1997 10. 31. 확정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확정판결’이라 한다).

3) 원고는 2006. 9. 27.경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1274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에 기하여 2006. 11. 14. 50,000원을 회수하였다는 채권추심신고를 하였고, 그 무렵 위 채권압류는 집행해제 되었다.

4) 원고는 2016. 11. 8.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어음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이 소송에서 그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결과, 제1심법원은 2017. 2. 7. 이 사건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

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. 2. 18.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.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종료일부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13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한편,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50,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, 이 추심금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합의나 일방의 지정이 없으므로, 위 50,000원은 민법 제477조,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위 13,000,000원 중 10,000,000원에 대한 1996. 3. 31.부터 1996. 4. 30.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바,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3,000,000원 및 그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는 1996. 5. 1.부터, 3,000,000원에 대하여는 1996. 1. 1.부터 각 1997. 6. 10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 요지

피고는 1997년 IMF사태 당시 피고의 부도 어음들을 그 소지자와 합의하여 모두 회수함으로써 그 채무를 청산, 해결하였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소지 어음을 제출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,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서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, 후소 법원으로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(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

이에 비추어,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, 그 주장사실을

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,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,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민수, 판사 신민석, 판사 양우창